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칙 개정 계획

문정여자고등학교

I. 추진 근거

1. 체육예술인성교육과-3141(2023.4.13.) 「2023 학생생활규칙 개정 권고 사항 안내」
2. 체육예술인성교육과-11742(2023.9.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3. 체육예술인성교육과-12194(2023.9.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4. 체육인성교육지원과-6623(2023.9.2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 연장」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 절차

Ⅱ. 추진 배경 및 목적

1. 매년 학생 구성원의 1/3이 변경되는 현실 반영 및 교육주체의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학생생활 규칙 제·개정 추진의 필요성 증대
2. 학생·교사·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기반 조성
3.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협력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하게 마련 요구

Ⅲ. 방침

1.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생활규칙 개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생생활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체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2. 학생생활규칙 개정이 학급자치활동, 학생회 결의 등을 통해 학생자치의 실질적 작동 기제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3.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가정통신문(이알리미)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대표자(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에 의해 개정안을 협의한다.
4. 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입안을 예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Ⅳ. 세부 추진 계획

1. 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 문정여자고등학교-4465(2023.4.18.) 「2023학년도 각종 위원회 구성」
-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직 책
1	위원장	조○○	교감
2	위원	김○○	1학년부장
3	위원	조○○	2학년부장
4	위원	기○○	학생안전부장
5	위원	김 ○	학부모
6	위원	문○○	학부모
7	위원	한○○	학생회장(2학년)
8	위원	최○○	학생회부회장(2학년)
9	위원	양○○	학생회부회장(1학년)

2. 추진 일정

연번	일시	세부 내용		추진주체	비고
1	2023. 10. 16.(월) ~ 10. 23.(월)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 의견 수렴	학생 [붙임 1]	학생자치회	- 학급별 학급회의 운영
			학부모 [붙임 2]	학생안전부	- 홈페이지 공고 및 가정통신문(이알리미) 발송
			교사 [붙임 3]	학생안전부	- 쿨메시지 발송
2	2023. 10. 24.(화) ~10. 27.(금)	학생·학부모·교사 의견 종합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	
3	2023. 10. 30.(월) ~11. 3.(금)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초안 작성		생활규정제·개정 심의위원회	
4	2023. 11. 6.(월) ~11. 8.(수)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협의		생활규정제·개정 심의위원회	
5	2023. 11. 9.(목) ~11. 15.(수)	입안 예고		생활규정제·개정 심의위원회	
6	2023. 12월 예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생활규정제·개정 심의위원회	
7	2023. 12월 예정	개정된 학생생활규칙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안전부	
8	2023. 12월 예정	홍보 및 연수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	

2023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의견서[학생·학급용]

()학년 ()반

-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학생생활규칙의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과 관련된 활동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칙」은 ‘학교홈페이지 >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칙’에서, 2023년 9월 1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정 의견 중에서 학급 학생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의견이 있더라도 기록 부탁드리고 비고란에는 ‘개인 의견’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없으면 해당 서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생활규칙 개정 의견〉 *** 제출기한: ~10/23(월)				
연번	조항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	이유	비고
1				
2				

제2023-85호		가정통신문 “도전과 공감”	교감실	260-8201
			담당자	260-8240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칙」 개정 의견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학생생활규칙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안내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칙」을 학교 홈페이지 >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칙란에, 2023년 9월 1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2023학년도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칙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의견이 있으신 분은 10월 23일(월)까지 e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가정통신문에 직접 기술하시어 자녀 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절차 ①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및 학급회의와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 의견 수렴
 ② 생활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한 최종안 마련, 입안 예고
 ③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개정안 심의·의결

()학년 ()반 ()번 학 생: _____
 학부모: _____ (인)

연번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규칙	개정 의견
1		
2		

2023년 10월 16일
문 정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3]

2023학년도 문정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의견서[교사용]

이름 ()

- 학생생활규칙은 ‘학교홈페이지 >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칙’에서, 2023년 9월 1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교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10월 23일(월)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칙			
연번	조항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	이유
1			
2			